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10. 21.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0년 10월 8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0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 제22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0. 10. 1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부금품 접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부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과반수 참여 및 위원구성 편중 방지 명문화(안 제6조)
-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의무화 및 서면심의 원칙적 금지 조항 신설(안 제8조)
- 위원회 심의절차 명시 및 심의 이전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점검·점검결과 첨부 규정 신설(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한 기부금의 세부 절차를 조례로 개정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 기부자 등을 정의한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에는 접수가능하도록 명시한 규정에 따른 것임.
 - 안 제4조에서는 명예의 전당에 기부자 명단 부착, 구 주관 각종 행사 초청, 표창장·감사장 등 수여,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 이용 편의제공과 같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영등포구로 기탁되는 기부금의 지정 용도는 주로 장학기금이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비 마스크 등 물품기부가 많았으며, 기부자에 대한 예우로 구 청사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할 예정임.
 - 안 제5조의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근거한 규정이며,
 -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이는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위원의 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의 임명이나 위촉 등 구체적인 구성방법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는 규정임.

- 안 제9조는 기부금품의 기탁 및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운영 담당자가 구체적인 협찬 경위,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행위 여부나 직무관련성 여부 등 접수 관련 고려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이해충돌 상황에 대처하도록 하였고, 지정기탁서 및 심의요구서, 심의결과서 등 5종의 양식을 별지에 지정하였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을 조례로 체계화하여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 것으로 입법체계나 자구에 특별히 저촉됨이 없음. 또한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해 온 기부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예우로 기부자의 명예나 자긍심 고취 등 기부자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65 호
----------	---------

제출연월일: 2020. 10.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부금품 접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개정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 나. 동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부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 다. 위원회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위원의 과반수 참여 및 위원구성 편중 방지 명문화(안 제6조)
- 라.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의무화 및 서면심의 원칙적 금지 조항 신설(안 제8조)
- 마. 위원회 심의절차 명시 및 심의 이전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사전점검·점검결과 첨부 규정 신설(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나.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제4조(기부자 예우) 제1호 기부자 명단부착, 제4호 기부자 명단공지는 정보주체의 권리(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침해에 대한 방안 모색
 - 3)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 5) 행정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6) 위원회 운영사항 검토: 원안동의
- 라. 입법예고(2020. 9. 10. ~ 10. 5./ 25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
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부증서의 발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
부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

1. 명예의 전당 또는 상징물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3. 구청장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수여
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 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
6.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
2. 제4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구 소속 국, 소장
2. 위촉직 위원: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의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1. 심의·의결 사항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9조(심의·의결 절차 등)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기탁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위원회 개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전검토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위원회의 심의·의결시 첨부하여야 한다.
 - 1. 구체적인 협찬 경위,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
 - 2. 기탁 당시 공사·용역 등 계약 관계 존재 여부, 인·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 ④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신청인에게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심의 요구서

심의안건	
접수부서	
기탁자	<input type="checkbox"/> 성명(명칭)
기탁명세	<input type="checkbox"/> 기탁금액: 원 <input type="checkbox"/> 기탁물품 ○ 품명: ○ 수량:
사용목적	
<p>「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안의 심의를 요구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p>	

사전검토서

1. 기탁내역

접 수 부 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기탁내용	기탁금품액	기탁방법	
	목 적		

2. 검토사항

가. 행정 목적상 직접 필요성

나. 협찬 경위

다. 직무관련성 여부

3. 검토결과

가.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

심의의결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0000년 00월 00일 다음과 같이 의결함.

- 심의안건:
- 심의대상
 - 기탁금액: 000원
 - 기탁금품: 000점
- 의결내용:

연번	수탁기관	기탁내용		심의의결내용	비고
		기탁자	기탁금품		
총계		원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심의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0000년 00월 00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기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 일 시:
- 심의방법: 출석심의, 서면심의
- 참석위원: 총 00명 중 00명
- 심의안건:
- 심의결과:

0000년 00월 00일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 위원장